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

[김정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발의의원 : 김정태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(안 제1조)

나.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등 (안 제2조 ~ 제4조)

3. 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그 밖의 사고(이하 “결원 등”이라 한다)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의회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, 그 순위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장을 대리하고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59조(의장 직무대리)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60조(임시의장)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